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2023도7399 가. 상해

나. 명예훼손

피 고 인 김낙찬 (0000000-00000000), 운전사
주거

등록기준지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노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오○○

 대법관 안○○

주 심 대법관 노○○

 대법관 이○○